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재산 산정방식 개편 〉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0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재산 산정방식 개편	3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재산 산정방식 개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의 산정방식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 ----- ----- ----- ----- ----- <u>-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u> ----- ----- ----- ----- ----- ----- ----- -----.

② (생략) 제28조(농어업인의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u>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u>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어업인의 <u>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u> 산정에 관한 특례) ① ----- ----- ----- -----<u>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u>을----- ----- ----- ----- -----. ② ----- -----<u>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u>의----- ----- -----.
---	---

나. 검토의견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보험료의 경우 계속해서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

구분	조문
보험료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소득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재산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 현행법 제27조¹⁾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인용하여 각각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삼으면서,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²⁾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개정³⁾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진성⁴⁾을 해소하고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를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809)

4) 재산금액이 증가하여 등급이 높아질수록 재산 1만원 당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인용하여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표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행법도 변경된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명확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행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 산정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은 제도 운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 및 시기에 맞춰 용어 및 시행일 등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당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바, 해당법 개정 상황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